

높은뜻광성교회

2025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회계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2026년 2월

높은뜻광성교회 감사위원회

높은뜻광성교회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는 2026년 2월 21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양일 간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2026 회계연도의 회계 및 유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 감사의 권한과 근거

감사위원회는 「높은뜻광성교회 정관」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정된 「회계규정」 제48조제1항에 근거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감사 방법

감사위원회는 「높은뜻광성교회 회계규정」 및 「회계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였으며, 본 교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회계적 사건의 인식과 측정, 재무정보의 표시 등은 「일반적으로인정된 회계원칙」, 「비영리조직회계기준」 및 「공익법인회계기준」 등을 준용하여 판단 하였습니다.

본 감사를 위하여 일반회계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 목적헌금 재무상태표, 재정보고서, 각 부서별 장부 및 관련서류 등을 검토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대조, 실사, 입회,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3. 감사 의견

본 교회의 일반회계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 목적헌금 재무상태표는 교회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교회 내 각 부서는 배정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보다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상기 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개선 요구사항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개선 요구사항

1) 내부 경조사비 규정 보완

전년도 감사결과에 따라 신설된 「회계규정 시행세칙」 제30조 제3항의 내부 경조사비 규정에 일부 사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는 배우자 부모상 및 출산 관련 경조사비 지급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건비성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반영

강사비 또는 사례비 등 인건비 성격의 지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기로 과거 당회에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결의 내용이 회계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 결의 사항을 회계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회차량 사고 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납부 주체 관련 규정 마련

교회차량 운전(사역 목적의 운전에 한함)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운전자와 교회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역과 관련된 교회차량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규정 미비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구 마련 필요

상기와 같이, 규정 미비로 인해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구의 권한, 구성원(예: 행정목사, 예산위원장, 재정부장, 사무국장 등), 의사결정절차 등을 규정화하고, 균형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권고사항

1) 목적 현금 지출 관리 절차 통일

목적 현금의 대부분은 목적 현금계좌에서 직접 지출 관리가 되고 있으나, 일부 부서의 사역비는 개별 부서 계좌에서 지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미사용 금액이 장기간 부서 계좌에 방치되거나 관리상 누락되는 등 위험을 방지하고, 다른 목적 현금의 관리 방식과 동일하게 목적현금 계좌에서 직접 지출될 수 있도록 관리 방법을 변경, 통일하여 주시기 권고드립니다.

2) 장학금 지급 기준 마련 권고

목적 현금 내 장학금 일반 전형의 지급 내역 중 소득 구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상자에게 지급된 건이 1건 발견 되었습니다. 일반 장학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국장학재단 등 외부기간에서 발급한 소득 구간을 기준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3) 상품권 등 수령 관리 강화 필요

상품권이나 기프트콘의 경우 쉽게 현금화 가능한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처(수령자)에 대한 관리(기록)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상품권이나 기프트콘의 경우 사용처(수령자)를 관리(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액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첨부 필요

「회계규정 시행세칙」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 소요되는 행사나 사역은 지출결의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역 종료 후에는 내역서와 함께 사업보고서를 제시함으로써 사역을 위한 적정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계획에 따른 예산안과 실제 사역 결과의 비교를 통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교회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나, 총 소요 예산이 100만원 이상인 행사임에도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례가 발견 되었습니다. 고액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가 작성·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직접 사업비 포함)

5) 지출내역서 작성 및 관리

일부 부서에서 지출내역서가 부정확하게 작성되거나 서명 없이 처리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회계규정 시행세칙」 제20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대로 지출내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관련 증빙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높은뜻광성교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임 호 성



감 사 위 원 구 본 홍



감 사 위 원 김 현 우



감 사 위 원 박 선 영



감 사 위 원 임 광 준

